

中小企業製品 購買促進을 위한 団体隨意契約制度 運營

朴 鍾 峽 / 商工部 中小企業局 指導課 行政事務官

1. 中小企業製品 購買擴大를 위한 支援 施策

政府에서는 70年代末까지 우리경제가 指向하던 대기업 및 기간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80年代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균형적 발전의 必要性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을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생산제품의 판매 부진에 따른 가동 불안정과 자금의 원활한 조달 등, 중소기업자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전개하여 판매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여 생산, 판매, 가격, 품질 및 정보 등 모든 면에서 경쟁이 불리함은 물론, 중소기업간에는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판매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실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안정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1981年 12月 31日 法律 第3536号로 중소기업 구매 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同 구매촉진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단체수의계약 운용 지침을 만들어 단체수의계약 물품에 대한 배정기준, 계약참여원칙, 수수료 징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에 균등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제품을 소요로 하는 기관 중에서 막대한 구매력을 지닌 政府機關, 地方自治団体, 政府投資機關 및 特別法人으로 하여금 자체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이 때에 구매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団体隨意契約 制度 運營現況

가. 政府 등 公共機關의 中小企業製品 購買 計劃 作成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획 증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매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公告하고 있다.

1) 購買計劃 作成機關 및 作成節次

중소기업제품 구매대상인 공공기관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3개기관이나 이중 물품의 구매가 비교적 많은 41개 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表 1. 중소기업제품 구매대상 기관 및 구매계획 작성기관 현황

구 분	구매대상 기관	구매계획 작성기관	비 고
국 가 기 관	43개	7개	
지방자치단체	28개	28개	
정부투자기관	26개	5개	
특별법인	16개	1개	
계	113개	41개	

1월말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상공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구매계획을 관계기관의 장관과 협의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종합 작성한 후 중소기업 구매촉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는 同 구매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2) 中小企業者의 受注機會 增大를 爲한 措置事項

가) 中小企業에 對한 發注情報 提供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수주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물품별 세부 발주계획 및 구매관련 정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토록 하였으며 구매부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당자를 두어 중소기업자 및 협동조합으로부터 발주계획 등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였다.

나) 團體隨意契約에 依한 中小企業製品 購買 增大

공공기관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부득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자의 참여 폭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수주증대를 도모토록 하였다.

다) 單價契約 活用擴大와 適正價格으로의 購買 擴大

공공기관은 물품의 성질상 구매빈도가 높고 소량으로 수시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은 단가계약 품목으로 지정하여 협동조합과 연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계획생산에 의한 안정가동을 도모하도록 하고 또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급상황, 원자재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라) 工事資材의 團體隨意契約購買와 購買予 示制 積極 活用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소요 자재중 단체수의계약 물품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후 공사계약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또한 中期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중소기업자 및 협동조합에 予示하므로서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과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特定商標 등의 指定 制限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이나 원, 부자재에 대한 특정상표 또는 특수시방을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바) 中小建設業者 및 地方中小企業者의 受注 機會 增大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동 도급제도를 활용하여 중소 건설업자의 수주기회와 산하지방기관(지청, 지점, 지사 등)의 계약한도액을 증대하여 지방수요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기관에서 조달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증대토록 하고 또한 지방소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同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당해지역 소재의 중소건설업자들만이 참가하는 제한경쟁 입찰방법을 택하여 당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자가 수주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市, 道는 지방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당해지역 중소기업자의 애로사항을 市, 道の 지역경제협의회에 건의하여 해결토록 하였다.

사) 協同組合의 努力

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 물품배정에 있어서 계약된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에게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검사 및 품질관리 지도 등 제반의 품질보장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였다.

나. 团体随意契約 物品指定

1) 物品의 指定節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의 지정은 품질향상 계획의 수립, 집행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의 제품과, 조합원에게 균등한 수혜를 보장할 수 있는 수혜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조합의 제품 중 물품의 성질상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으로 생산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납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품질이 안정된 물품과,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가 3인 이상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품목에 대하여는 6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하고 있다. 그이외에도 이미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규 품목으로써 중소기업 고 유업종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상공부장관에 추천하면 상공부장관은 각 물품의 주무부서와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의 타당성 및 공정거래 측면 등의 의견을 받아 각 조합별, 물품별로 지정하여 공고한다.

2) 团体随意契約 運用指針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이 협동조합과 체결한 단체수의계약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각 조합원 업체에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同운용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표2>의 수혜기준 작성시의 적용 항목과 적용방법, 계약참여의 원칙, 지방조합원, 연합회, 소조합, 비조합원 및 대기업에 대한 물량 배정방법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능한한 전 조합원이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안정가동과 균형적인 육성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团体随意契約 制度의 運營成果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수립과 구매실적 분석 등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최초 시

表 2. 团体随意契約 受惠基準 適用項目

항 목	적 용 기 준
생 산 능 력 또 는 실 적	○주요제조설비, 작업인원 또는 전년도 생산(판매)실적
수 출 실 적	○수출실적과 그 신장률
출 자 금	○출자금액
품 질 수 준	○KS표시허가 획득 품목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등급사정을 받은 물품 ○국내 공인기관 또는 외국 유명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물품 ○품질관리대회 또는 분임조 경진 대회시 수상업체
신 기 술 개 발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개발품 ○특허를 받은 물품 ○선두 개발제품 ○수입대체 개발 품목
공 동 사 업 참 여	○전년도 조합의 공동사업 참여실적(단체수의계약 실적 제외)
정 부 시 책 참 여	○유망중소기업, 새마을공장,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행년도인 83년부터 87년까지 5년 동안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실적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주요 실적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실적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금액면에서는 83년의 2 조 7,086억원이 87년에는 4 조 8,449억원으로 2 조 1,363억원이 증가하여 무

表 3.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88년도 구매계획

연 도	총구매액 (A)	중소기업제품구매		단체수의계약구매	
		금액(B)	B/A	금액(C)	C/B
1983	73,686	27,086	36.7	5,034	18.6
1984	85,572	32,666	38.2	5,848	17.9
1985	87,206	38,118	43.7	6,548	17.2
1986	89,483	41,735	46.6	7,119	17.1
1987	102,831	48,449	47.1	7,921	16.3
1988(계획)	103,969	51,629	49.7	8,000	15.5

러 79퍼센트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고, 구매비 중면에서는 83년의 36.7퍼센트에서 87년에는 47.1퍼센트로 5년간 10퍼센트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실적으로써 금액면에서는 매년 증가하여 87년에는 83년의 5,034억원보다 2,887억원이 증가한 7,921억원으로서 57.4퍼센트가 증가하였으나, 구매비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의 내실화와 동계약 물량이 조합원 업체에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단체수의계약 운용 지침도 물품의 성질이나 구매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정내용 중 중요사항으로는 물품별, 업체별, 배정비율을 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품목별 생산업체 전원이 합의하여 배정비율 또는 배정업체를 정하는 경우나, 건별 계약물량이 소액, 소량이고 물품의 성질상 분할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이사회 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혜기준 적용방법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물품의 성질상 개개물품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유사물품군별로 배정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매기관에서 납품자격을 제한(예 : KS업체, 등록업체 등)하는 경우에는 구매기관별, 해당업체별로 배정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혜기준 적용방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였다.

이와 같이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을 매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 품목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점진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同구매방법도 점차 단체수의계약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表 4. 연도별 단체수의계약품목 지정현황

연도	지정(개)		계약실적(개, 억원)		
	조합수	품목수	품목수	금액	참여업체수
1983	46	1,474	806	5,034	3,887
1984	50	1,408	930	5,848	3,746
1985	54	1,362	977	6,548	3,521
1986	60	1,052	899	7,119	3,830
1987	66	924	811	7,921	4,239
1988	72	926	-	-	-

3. 团体随意契约制度 運營上 問題点 및 앞으로의 運營方向

가. 運營上의 問題点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에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로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구매기관에서는 감사기관의 감사나 공사계약상의 편의 또는 간편성 등을 사유로 공사자재의 관급제도를 시공업자의 지입제도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특정상표의 지정 및 특수사양제품의 발주 등으로 특정업체나 극히 소수의 업체만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기피함으로써 매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함께 통보하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사항의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경제기획원은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공정거래 측면에서 불 때에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의 단합이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간 경쟁의식 퇴화 등을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보아 개방경제 정책이나 시장자유경쟁시책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여 단체수의계약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은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하므로서 2중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해야 제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었으나 상당기간 계약실적이 없는 물품과 수요가 적고 수요의 발생이 불규칙적인 물품이나 물품의 성질 및 특성상 중소기업자 다수가 생산과 납품이 불가능한 물품 등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부적합한 물품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 협동조합이 검사 및 규격규정의 미제정 등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의 노력이 부진한 품목으로서 생산제품의 품질이 저급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품목도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세째, 협동조합이 계약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수주활동이 미진하고 개발조합원사의 수주활동에 의존함에 따라 조합은 형식적인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와 수혜기준 적용방법 및 항목별 적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네째, 매년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시에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사항으로 계약된 물량을 배정할 때 대기업이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배정하는 경우와 조합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추천 및 지정과, 지정된 물품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으로의 運營方向

1) 中小企業製品 購買促進法の 運營 活性化

구매기관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매대상제품의 수급상황이나 원, 부자재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원가계산에 따른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고 가능한 단가계약 품목을 확대하고 물품구매에 시세의 적극 도입 및 발주정보의 사전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자가 품질향상과 계획생산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는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수준제고와 납기이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매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

다.

2) 団体隨意契約 運用指針의 補完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량 배정시 품질의 우수업체나 신기술 개발업체 등을 우대하는 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고 경쟁력이 확보된 물품은 해당 중소기업자만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물품으로 전환하는 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단체수의계약 운용 지침을 개선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서 각 분야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규칙 제 1 조의 단체수의 계약물품 추천기준을 개정하여 생산조합원수를 현행 3 인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규지정 품목의 생산조합원수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아가겠다.

둘째,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도 개정하여 일정기간 계약실적이 없거나 계약실적은 있어도 소액, 소량, 다품종인 물품과 대기업이나 특정업체에 편중 배정한 물품 등은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세째,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이 미흡한 품목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함은 물론 단체수의계약 수혜기준 적용항목중 품질수준 및 신기술 개발 항목의 배점비율을 상향조정하므로써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네째, 중소기업제품 구매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많은 량의 중소기업제품을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토록 하고 공사를 발주할 때에도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제한경쟁 계약을 확대하고 同공사에 소요되는 原, 副資材중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하여 발주기관에서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공급하거나 공사 시공업자로 하여금 단체수의 계약에 의거 구매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것이다.

끝으로 협동조합은 제품의 규격 및 검사규정

(P. 71로 계속)

表 5 各種 Chip 部品과 包裝形態

	Magazine	Tape	Plastic (emboss) Tape				粘 着 Tape 32mm幅
		8mm幅	8mm幅	12mm幅	16mm幅	24mm幅 32mm幅	
角型 Chip 固定抵抗器	○	○	○				
円筒型 Chip 固定抵抗器			○	○			
Chip 半固定抵抗器	○			○			
Mini Flat 抵抗 Network	○					○ (24mm)	○
Chip 型積層 Ceramic Condenser	○	○	○				
円筒型 Ceramic Condenser			○				
Chip Tantal 固体電解 Condenser			○	○			
Chip aluminium 電解 Condenser				○	○		
Chip Trimmer Condenser				○			
Chip Film Condenser				○			
Chip Inductor			○	○			
Chip Light Touch Switch				○			○
SOP 半導體 素子	○					○	

裝形態를 表 5에 제시한다. 이들은 EIAJ-RC 1009B와 1010으로 規格化되어 있다. 最近의 움직임으로서 44~56mm와 같은 幅이 넓은 Emboss Taping 및 1 Reel當의 取納個數의 上昇手段으로서 2mm Pitch taping의 追加檢討가 시작되고 있다. 海外規格으로서 是 IEC의 40(Co) 564와 ELA-RS 481A가 있다. Tape의 幅, Pitch 치수 등에서 基本的인 차이는 없으나 앞으로 Reel徑, Cavity의 크기, Cover tape의 剝離強度 등 國際化의 進展에 따라 EIAJ 規格과 海外規格과의 사이의 整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檢討도 추진되고 있다.

라. 今後의 課題

이상 기술한 各種의 課題와 이의 対応外에 今後 産業用分野에 대한 擴大라는 背景 속에서 특

히 추진해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Chip 部品自體의 信賴性, 故障率水準의 把握과 더불어 납땜接合部分의 信賴性의 評價檢討가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歐美의 SMT關係者 間에서 오히려 積極的인 檢討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実裝基板의 檢査課題라고 생각한다. 電子機器의 小型, 輕量化, 高密度実裝化는 永遠한 Thema이며 配線 패턴의 微細化, 部品の 小型化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으나 半面に 檢査에 要하는 努力도 두드러지게 增大된다고 생각된다. 패턴 認識 등을 도입한 各種의 檢査裝置도 開發되고 있으나 앞으로 超高密度로 実裝된 基板에 對해 여하히 高速, 高精度로 対応할 수 있을 것인가가 SMT가 앞으로 순조로히 發展해 나가기 위한 큰 문제의 하나로 생각된다.

P. 60에서 계속

을 제정하고 계약주체로서 적극적인 수주활동의 전개와 조합원사 생산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공동판매장 운영을 확대함은 물론 각종 정보교환 및 홍보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은

정부의 제도적 보호 속에서 안주하려는 소극적인 기업활동을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인 기업활동의 전개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